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20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3-24호((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대상: 김○규(69년생,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나. 처분원인: 2025년 5월 18일(일) 14:53경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다. 부과내용: 과태료 600,000원

라. 공고기간: 2025. 7. 30. ~ 8. 13.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051)로 연락하여 본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950-20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